

# 코로나19 관련 우즈베키스탄 입·출국 등 Q&A

<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, 2022.5.23.(월)>

## 1.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나요?

- 코로나19 **백신여권이나 백신접종증명서(QR코드 필수)**를 소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경우 **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**합니다. 다만, 상기 백신여권이나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을 경우 도착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(QR코드 필수, 영어 또는 러시아어 기재)를 소지하거나 우즈베키스탄 도착 시 신속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※ 12세 미만은 모두 면제

## 2.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?

- 네.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국별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라 적색 (한국, 일본 등) 및 황색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격리동의서를 제출하고 우즈베키스탄 도착시 14일간 거주지 또는 호텔 등에서 격리해야 합니다.
- 다만, **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항체증명서**를 소지하고 항공기나 열차로 입국할 경우 **자가격리 등 제한이 없습니다.**

※ 대사관 홈페이지 <영사-재외국민보호-안전공지> 123번(2021.7.31.), 132번 (2021.9.23.) 참고

## 3.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조치가 있나요?

-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부처를 포함한 모든 기관은 백신 접종자만 출근이 가능하며,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의 다중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.

#### 4. 우즈베키스탄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?

- 네, 한국인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.

#### 5. 코로나19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출국이 어려운데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던 정책이 변경되어 **2021.9.10 이후부터는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갖추고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.**

※ 대사관 홈페이지 <영사·재외국민보호-안전공지> 129번(2021.9.6.) 참고

#### 6. 우리 국민도 한국으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나요?

- 네,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도 **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(국문 또는 영문)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 전문가가 실시한 RAT 음성확인서**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**(예방접종완료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음성확인서 필수 지참)**

※ PCR 음성확인서 세부기준은 대사관 홈페이지 <영사·재외국민보호-안전공지> 153번(2022.3.14.) 및 <뉴스-공지사항> 1201번(2022.5.19.) 참고

#### 7. 한국 입국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내 PCR 검사기관은 어디인가요?

- 2022.3.14.부터 **검사기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.** 다만, PCR 음성확인서 **세부기준을 충족**해야 합니다.

※ PCR 음성확인서 세부기준은 대사관 홈페이지 <영사·재외국민보호-안전공지> 153번(2022.3.14.), 154번(2022.3.16.) 참고

## 8. 우리 국민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시 어떻게 되나요?

- (입국 전)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시 **항공기 탑승 불허**, (입국 후)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시 **5일간 시설격리** (외국인은 입국 불허)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<영사·재외국민보호-안전공지> 153번(2022.3.14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9. 한국 입국 시 어떠한 경우에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- **2022.4.1.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**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**격리면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<영사·재외국민보호-안전공지> 156번(2022.3.21.) 및 <뉴스-공지사항> 1201번(2022.5.19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**예방접종 미완료자**는 중요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,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,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의 경우에만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10. 재외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있나요?

- 우리 정부가 접종하는 코로나 백신은 재외국민도 한국 내에서만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접종 절차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순서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다만,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외국인도 우즈베크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본인의 거주등록지 관할 가정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.
- ※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백신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2021년 6.23, 6.24, 6.30 백신 우선 접종 완료